

#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내용과 과제

황 용 경

(경남중재부장,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1. 머리말

2005. 1. 27. 법률 제7370호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이 제정, 공포되어 2005. 7. 28.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명확해지고, 국민의 권리도 한층 신장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정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언론중재법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 2. 언론중재법의 제정 경위

### 가. 헌법 및 민법의 관계 규정

헌법은 제10조에 행복추구권, 제17조에 사생활 보호, 제 19조에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764조에서는 명예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단순한 금전배상을 넘어서 명예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